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폭을 넓히고 지방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분야·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으로의 전보 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문경력관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없이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

② 임용권자는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(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 또는 전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: 7년

2.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(상위 직위군으로의 전보는 제외한다) : 5년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
이 영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전보 등)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.	제14조(전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<u>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문경력관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없이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</u>
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	② <u>임용권자는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(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 또는 전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	1. <u>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: 7년</u>
	2. <u>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(상위 직위군으로의 전보는 제외</u>

<u>한다) : 5년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4